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파인증 시험비용 지원사업

2020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인증 가이드북

2020. 10.



2020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인증
가이드북**
CONTENTS

1.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제도 개요	04
2. 적합성평가 대상기기	07
3. 적합성평가 신청 종류	08
4. 적합성평가 신청 및 세부절차	09
5. 적합성평가의 표시기준 및 방법	16
6. 적합성평가 면제	19
7. FAQ	22
(참고1) 적합성평가 대상 기자재 별 인증 유형	26
(참고2) 적합성평가 지정시험 기관 현황	53
(참고3)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파인증 시험비용 지원사업	56





1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제도 개요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 제도

정의 | 전파 혼·간섭, 전자파로부터 기기 및 인체의 보호를 위해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제조 또는 판매·수입하기 위해 적합성 평가기준의 부합여부를 확인하는 법적 강제 제도

대상기기 | 전파 혼·간섭 및 전자파 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방송통신기자재

< 적합성평가 운영체계 >

구분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 제도
규제 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MSIT)
인증 기관	국립전파연구원(RRA)
시험 기관	국립전파연구원 지정시험기관(53개)
인증 대상	유·무선 및 방송·정보·통신기기 등
인증 유형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

적합성평가의 유형

이용자 안전 및 전파 혼·간섭 등의 **위해도의 영향에 따라** ①적합 인증, ②적합등록, ③잠정인증 3가지 인증유형으로 구분

구분	적용 대상	대상기자재의 예
적합 인증	전파의 혼·간섭 및 전자파로부터의 기기동작, 인명 안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방송통신기자재	스마트폰, 선박국용 레이더, 통합공공망 및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등
적합 등록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I 적합인증 대상기기보다 전파 혼·간섭, 전자파의 위해 영향이 적은 방송통신기자재	컴퓨터, 모니터, 전기세탁기, 전동공구, 블루투스 스피커, 전동스쿠터, 조명기기 등
적합 등록	자기시험기관 적합등록 I 사용범위가 한정되고, 특정 분야에서만 사용되는 측정·검사용 및 산업·과학용 방송통신기자재	스펙트럼 분석기, 산업용 컴퓨터 등
잠정 인증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성 평가가 곤란한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신규개발기기

적합성평가 절차

구분	적합성 평가 절차			
적합인증	제조/수입/판매자	시험 지정시험기관	인증 신청 국립전파연구원 (www.emsit.go.kr)	적합 인증서 교부 국립전파연구원
적합등록	제조/수입/판매자	시험 지정시험기관	등록 신고 국립전파연구원 (www.emsit.go.kr)	적합 등록 필증 교부 국립전파연구원
※ 자기 시험기관 적합등록 대상일 경우 자체, 해외 시험기관에서 시험 가능				
잠정인증	제조/수입/판매자	시험 자체 및 지정시험기관	인증 신청 국립전파연구원 (www.emsit.go.kr)	잠정 인증서 교부 국립전파연구원

적합성평가 신청 및 구비 서류

구분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
제출 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1. 적합인증 신청서 2. 사용자설명서(한글) 3. 시험성적서 4. 외관도 5.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6. 회로도* 7. 대리인 지정서 ※ 회로도 제출 생략 요건 - 병행수입을 행하는 수입자가 신청할 경우 - 그 밖의 사유로 수입자가 회로도를 확보할 수 없어 제출이 어렵다고 국립전파연구원장이 인정할 경우	신청인 제출 서류 1. 적합등록 신청서 2.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 3. 대리인지정서 신청인 비치서류 1. 사용자설명서 2. 시험성적서 3. 외관도 4.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5. 회로도 6. 파생모델의 전기적인 회로·구조·성능 및 부가적인 기능에 관한 서류 7.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1. 잠정인증 신청서 2. 기술설명서 3. 시험결과 설명서 4. 사용자설명서(한글) 5. 외관도 6.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7. 회로도 8. 사업자등록증 9. 위임장 (대리 신청의 경우)
처리 기간	5일	1일	60일

【관련 규정】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2020-7호) 제5 ~ 14조



적합성평가 시험 항목

구분	적용	
전자파 적합성 (EMC)	전자파장해(EMI)	기자재로부터 발생하는 불요 전자파를 측정
	전자파내성(EMS)	전자파 장애로부터 기자재의 내성 능력을 측정
유선	전기 통신 회선에 접속되는 단말기기의 통신요구조건 적합성 여부 측정	
무선	전파 혼·간섭으로부터의 안전을 위한 무선통신의 송신 및 수신에 대한 기술기준의 적합성 여부 측정	
전자파 인체 보호	전자파 흡수율 (SAR)	무선을 사용하는 기기(휴대폰, 태블릿PC)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사람의 인체에 흡수되는 에너지의 양을 측정
	전자파 강도 (EMF)	자기장을 사용하는 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하여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자기장 측정

적합성평가 절차

● 적합성평가 신청 수수료

적합성평가 유형	수수료
적합인증 및 잠정인증	165,000원
적합등록	55,000원

● 적합성평가 변경 수수료

구분	적합성평가 유형	수수료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된 사항의 변경	적합인증	165,000원
	적합등록	55,000원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되지 않는 사항의 변경	적합인증	5,000원
	적합등록	2,000원

【관련 규정】 전파법 시행령 제97조의 3

2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 대상기기

적합성평가 대상기기

시험 항목	대상 기자재
전자파 적합성 (EMC)	- 정격전압 600V를 초과하지 않는 정보기기 및 9kHz 이상의 타이밍 신호 또는 펄스를 발생시키는 회로가 내장된 디지털 장치 - 대상기자재의 예 정보통신기기(ITE), 방송장비, 전기·전동·조명기기 등
유선 (Telecom)	- 유선 통신 회선에 접속되는 시스템 및 단말기기 - 대상기자재의 예 전화기, 팩스, 셋톱박스 등 유선통신기기
무선 (RF)	- 전파를 이용하여 정보를 송·수신하는 무선통신 설비 및 기자재 - 대상기자재의 예 스마트폰 등 ICT 무선통신기기, 기지국, 레이더 등
전자파 흡수율 (SAR)	- 안테나공급전력이 20mW를 초과하고 통상 이용 상태에서 전파 발사 중심점이 인체로부터 20cm 이내에 사용되는 휴대용 송신 무선설비 - 대상기자재의 예 스마트폰, 태블릿 PC, 노트북 등
전자파 인체 보호	- 전파법 제47조의2제3항에서 규정한 무선국 (이동용, 비상통신용, 접근빈도가 낮은, 신고하지 않고 개설했 수 있는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제외) - 유도가열방식(IH, Induction Heat)으로 동작하는 주방용 전열기구 및 전기액체 가열기기 -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 침대 (USB로만 전원이 공급되는 기기와 직류전원으로만 동작하는 기기는 제외) - 10GHz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무선설비 중 안테나공급전력이 20mW를 초과하고 인체로부터 20cm 이내에 사용되는 휴대용 송신 무선설비 - 대상기자재의 예 이동통신 무선국, 기지국, 전기담요, 매트, 인덕션 등

※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표1 및 적합성평가제도 가이드북 '참고1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참조

※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www.rra.go.kr) 접속 후 상단메뉴 항목 중 '알람 소식' → '법령정보' → '고시·공고'에 각 시험 항목별 기술기준 다운로드 가능



3

방송통신기자재등 적합성평가 신청 종류

적합성평가 인증 신청 종류

- 1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인증**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파방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 2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

적합인증대상이 아닌 지정시험기관/자기시험 적합등록 대상기자재에 대하여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 3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잠정인증**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성평가(적합인증, 적합등록)가 곤란한 경우 신청
- 4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식별부호 지정**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신청 시 신청자의 식별부호를 지정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최초 인증 진행 시 필요)
- 5 동일기자재 적합인증 (적합등록)**

기자재명칭·모델명·제조사·제조국가·전기적회로·부품·구조·성능·외관법 제58조의2에 따라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을 받은 기자재와 동일한 경우 신청
- 6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면제 확인**

시험·연구, 기술개발, 전시, 수출 등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통신기자재로서 적합성평가를 면제 받고자 할 때 신청
- 7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변경신고**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인증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신고
- 8 적합성평가 해지**

방송통신기기의 제조 또는 수입을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 9 적합성평가인증서 재발급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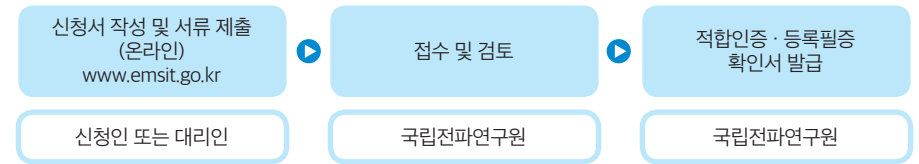
인증서를 교부받은 자가 인증서를 분실, 손상, 또는 기타 등의 이유로 재발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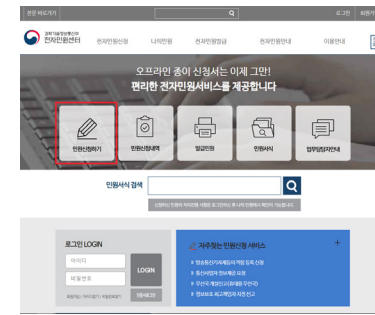
방송통신기자재등 적합성평가 신청 및 세부절차

적합성평가 인증 신청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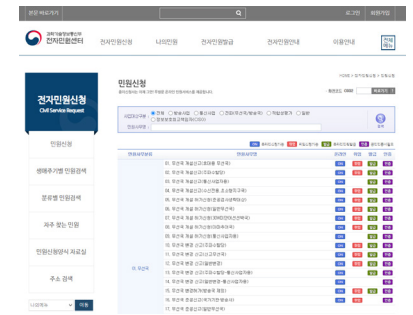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www.emsit.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직접 혹은 대리인이 위임하여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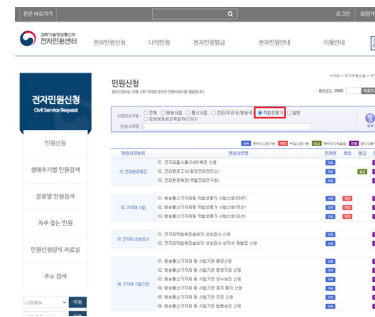
< 전자민원센터(www.emsit.go.kr) 온라인 신청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www.emsit.go.kr



2 전자민원 신청 항목



3 전자민원 신청 중 적합성평가

이. 동일기자재 적합인증(면제) 신청	100%	100%	100%	100%
예.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인증	100%	100%	100%	100%
예.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	100%	100%	100%	100%
예.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잠정인증	100%	100%	100%	100%
예.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면제 확인 신청	100%	100%	100%	100%
예.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변경신고	100%	100%	100%	100%
예.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재발급 신청	100%	100%	100%	100%
예. 적합성평가 면제	100%	100%	100%	100%
예. 적합성평가 면제 취소	100%	100%	100%	100%
예. 적합성평가 면제 해지	100%	100%	100%	100%

4 기자재 적합성평가 신청 항목



적합성평가 인증 세부 절차

① 적합(잠정) 인증·등록 신청(최초 인증)

순번	구분	세부 절차						
1	신청인	신청기자재 해당여부 및 적합성평가 유형 확인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표1] 및 가이드북 '참고 1. 적합성평가 대상 별 인증 유형' 참조						
2	신청인	지정시험기관 시험 의뢰 ※ 가이드북 '참고 2 지정시험기관 현황' 참조 ※ 자기시험기관 적합등록 대상 제품일 경우 자체시험 가능						
3	신청인 또는 대리인	신청자 식별부호 신청(신청자 식별부호가 있을 시 생략) ※ 가이드북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식별부호 지정 절차' 참조						
4	지정시험기관 또는 신청인	시험 및 성적서 발행						
5	신청인 또는 대리인	적합(잠정) 인증·등록 신청서 온라인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www.emsit.go.kr)						
		<table border="1"> <thead> <tr> <th>적합인증</th> <th>적합등록</th> <th>잠정인증</th> </tr> </thead> <tbody> <tr> <td>① 사용자설명서(한글) ② 시험성적서 ③ 외관도 ④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⑤ 회로도 ⑥ 대리인 지정서 ⑦ 면허세 영수증</td> <td>①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 ② 대리인지정서 ③ 면허세 영수증</td> <td>① 기술설명서 ② 시험결과 설명서 ③ 사용자설명서(한글) ④ 외관도 ⑤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⑥ 회로도 ⑦ 사업자등록증 ⑧ 위임장(대리 신청의 경우) ⑨ 면허세 영수증</td> </tr> </tbody> </table>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	① 사용자설명서(한글) ② 시험성적서 ③ 외관도 ④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⑤ 회로도 ⑥ 대리인 지정서 ⑦ 면허세 영수증	①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 ② 대리인지정서 ③ 면허세 영수증	① 기술설명서 ② 시험결과 설명서 ③ 사용자설명서(한글) ④ 외관도 ⑤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⑥ 회로도 ⑦ 사업자등록증 ⑧ 위임장(대리 신청의 경우) ⑨ 면허세 영수증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						
① 사용자설명서(한글) ② 시험성적서 ③ 외관도 ④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⑤ 회로도 ⑥ 대리인 지정서 ⑦ 면허세 영수증	①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 ② 대리인지정서 ③ 면허세 영수증	① 기술설명서 ② 시험결과 설명서 ③ 사용자설명서(한글) ④ 외관도 ⑤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⑥ 회로도 ⑦ 사업자등록증 ⑧ 위임장(대리 신청의 경우) ⑨ 면허세 영수증						
6	국립전파연구원	신청 서류 검토 및 인증, 등록 필증 발행 ※ 처리기간: 적합인증(5일), 적합등록(1일), 잠정인증(60일)						
7	신청인 또는 대리인	적합(잠정) 인증서·등록 필증 확인 및 출력						

적합성평가 절차 및 서류 간소화

- 적합성평가(적합인증·등록)를 받은 구성품을 사용한 기자재에 대하여 **당시 적용된 시험성적서 및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
 - 다만, 적합성평가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자파적합성기준, **전자파흡수율 및 전자파강도 등에 대한 시험성적서는 제출**
 - 예) 적합인증을 받은 블루투스 무선 송·수신 부품을 장착한 블루투스 스피커의 경우, 블루투스 스피커의 적합등록 진행 시 무선시험 생략
- 대상 기자재
 -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을 장착한 기자재
 - 적합성평가를 받은 '슬롯형 착탈식 유선팩스 전용모듈'을 장착한 기자재
 - 적합성평가를 받은 '완구(어린이용 장난감)용 모터'를 장착한 완구제품 (별도의 능동회로가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

【관련 규정】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2020-7호) 제20조





②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식별부호 지정

순번	구분	세부 절차
1	신청인	신청서 온라인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www.emsit.go.kr) < 제출 서류 > ① 위임장 (대리 신청의 경우)
2	국립전파연구원	신청 서류 검토 및 처리 ※ 처리기간: 즉시

③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면제 확인

순번	구분	세부 절차
1	신청인	신청기자재 면제 대상여부 확인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2020-7호) 제18조 및 가이드북 '6. 적합성평가 면제 대상기기' 참조
2	신청인	신청서 온라인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www.emsit.go.kr) < 제출 서류 > ① 면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시험연구계획서, 사유서, 수출계약서, 납품계약서 등 면제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② 수입물품의 품명 및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수입계약서, 물품매도확약서, 화물송장(인보이스) 등
3	국립전파연구원	신청 서류 검토 및 처리 ※ 처리기간: 1일

④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변경신고

순번	구분	세부 절차				
1	신청인	적합성평가 사항의 변경 대상범위 확인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2020-7호) 제15조 및 가이드북 '적합성평가 사항의 변경 범위' 참조				
2	지정시험기관 또는 신청인	시험 및 성적서 발행 ※ '적합성 평가 기준과 관련된 변경사항' 일 경우 해당				
3	신청인 또는 대리인	신청서 온라인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www.emsit.go.kr) < 제출 서류 > ①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적합성평가 기준과 관련된 변경사항</th> <th>적합성평가 기준과 관련되지 아니한 변경사항</th> </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 신고서 · 시험성적서 · 외관도 ·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 회로도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합인증서/적합등록 필증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원 등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필요 시) </td> </tr> </tbody> </table> ②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 ③ 대리인 지정서	적합성평가 기준과 관련된 변경사항	적합성평가 기준과 관련되지 아니한 변경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 신고서 · 시험성적서 · 외관도 ·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 회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합인증서/적합등록 필증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원 등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필요 시)
적합성평가 기준과 관련된 변경사항	적합성평가 기준과 관련되지 아니한 변경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 신고서 · 시험성적서 · 외관도 ·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 회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합인증서/적합등록 필증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원 등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필요 시) 					
4	국립전파연구원	신청 서류 검토 및 변경신고 처리결과 통보 ※ 처리기간: 즉시(또는 5일)				



적합성평가 사항의 변경 범위

구분	변경 사항
적합성평가 기준과 관련된 변경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로의 변경(인쇄회로 포함)이나, 구성품의 대체, 추가로 인한 변경, 부품소자의 제거, 대체, 추가로 인한 변경 또는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변경의 경우 (형식기호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하드웨어 변경 없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새로운 기능 등을 구현 또는 추가함으로써 적합성평가기준의 시험항목이 변경되는 경우 (무선기자재의 기기부호가 추가되는 경우 외에는 형식기호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컴퓨터·스마트폰·스마트 TV 등과 같이 일반 사용자가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직접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범용 정보기기는 변경사항에서 제외한다.) 완제품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가 전파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주파수 할당에 따라 하드웨어 변경 없이 사용주파수 또는 기술방식이 달라지는 경우
적합성평가 기준과 관련된지 아닌지 변경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파생모델명을 변경하는 경우 제조사 또는 제조국가를 변경하는 경우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목에 따라 상호·성명·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 또는 법인(법인 내 사업부서 포함)을 양도·합병·분할하는 경우 - 개인사업자가 법인(개인사업자가 법인의 대표자와 동일한 경우)으로 전환하는 경우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에게 양도·양수하는 경우 - 기타 상호명·성명·주소를 단순 변경하는 경우
적합성평가 기준과 관련된 변경사항 중 변경 대상이 아닌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드웨어 변경 없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사용 중인 기능을 차단하거나 또는 삭제하는 경우 저항(Resistor), 인덕터(Inductor), 캐패시터(Capacitor)를 동일한 종류의 부품 소자로 대체(단, 부품소자의 전기적 크기나 용량에 관계없이 대체할 수 있다.) 다이오드(발광다이오드 포함)를 동일한 종류의 다이오드로 대체 전기적 회로는 동일하고 전력용량(Wattage)을 축소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의 구성품을 제거 컴퓨터 내장 구성품 중 적합성평가를 받은 동등한 기능의 구성품으로 대체 무선 송·수신용 부품(또는 무선기능의 완성품)을 적합성평가를 받은 동등한 기능의 다른 무선 송·수신용 부품(또는 무선기능의 완성품)으로 대체 무선 송·수신용 부품(또는 무선기능의 완성품)을 제거

【관련 규정】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2020-7호) 제15조

⑤ 동일기자재 적합인증·등록

순번	구분	세부 절차
1	신청인	신청서 온라인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www.emsit.go.kr) < 제출 서류 > ① 동일기자재 적합성평가 신청 동의서 ② 적합인증서 또는 적합등록필증 ③ 외관도 ④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⑤ 면허세영수증 ⑥ 위임장
2	국립전파연구원	신청 서류 검토 및 처리 ※ 처리기간: 즉시

⑥ 적합성평가 해지 및 재발급

순번	구분	세부 절차
1	신청인	신청서 온라인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www.emsit.go.kr) < 제출 서류 > ① 적합인증서 또는 적합등록필증 (해지 시 제출) ② 위임장 (대리 신청의 경우)
2	국립전파연구원	신청 서류 검토 및 처리 ※ 처리기간: 1일





5

적합성평가의 표시기준 및 방법

적합성평가 표시기준

- 적합성평가 표시 : 국가통합인증마크 + 식별부호 + 적합성평가 정보

가. 국가통합인증마크 및 식별부호	나. 적합성평가 정보
 <p><기본도안></p>  <p><식별부호 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의 상호(또는 상호명) · 기자재 명칭(또는 제품명칭) · 모델명 · 제조시기(제조연월로 표기) · 제조자 및 제조국가

다. 적합성평가 표시 도안(예)



적합성평가 식별 부호

R	-	C	S	-	A	B	C	-	X	X	X	X	X	X	X	X	X	X	X	X	X
①		②	③		④				⑤												
방송통신 기기식별		기본인증 정보식별			신청자 정보식별				제품식별												

- ① 전파법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를 의미하는 'R'을 기재
- ② '인증분야 식별부호'

인증분야	식별부호
적합인증	C (Certification)
적합등록	R (Registration)
잠정인증	I (Interim)

- ③ 동일기자재에 대한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의 경우에만 'S'를 기재
- ④ '신청자 식별부호': 영문, 숫자 3자리로 구성되며 신청자가 신청하여 획득
- ⑤ '제품 식별부호': 14자리 이내(영문, 숫자, 하이픈(-), 언더바(_) 혼용 가능)에서 신청자가 직접 선정

적합성평가표시 방법

- 부착위치 | 제품의 표면 또는 포장에 알아보기 쉽도록 인쇄 또는 각인으로 기기마다 견고하게 부착 표시
-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 슬롯형 착탈식 유선팩스 전용모듈, 완구용 모터를 완제품의 구성품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완제품상에 구성품의 적합성평가 식별부호를 표시

【관련 규정】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표5]

전자적 표시 (e-labelling) 방법

- 전자적 표시 (e-labelling)
 - 적합성평가표시를 펌웨어나 소프트웨어 또는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적 표시(e-labelling) 방법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 ① 디스플레이 방식 | 디스플레이가 내장된 제품(프로젝터 등과 같이 자체 디스플레이 제품 포함)으로서 사용자가 디스플레이를 임의로 제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 ② QR코드 방식 | 제품의 표면 또는 포장에 표시하며 QR코드 내에 직접 적합성평가정보를 수록하는 정보수룩방식과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의 홈페이지 URL 링크를 통해 적합성평가정보를 표시하는 링크방식을 선택적으로 적용

표시방법

- 공동 요구조건
 - 사용자가 특별한 접근 암호나 인가절차 없이 장치의 메뉴에서 3단계 이하의 단계를 거쳐 정보에 접근 가능
 - 정보는 제3자(일반사용자)에게 부여된 권한(예 : 어플리케이션 설치, 메뉴접근 등)의 통상적 활동과정에서 변경 또는 제거될 수 없는 방식으로 보호



6

적합성평가의 면제

적합성평가 면제 대상기기

- 시험·연구, 기술개발, 전시 등 사용목적이 한정되는 기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면제대상 기자재	면제수량
적합성평가를 위한 시험, 제품의 품질·성능 검사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10대
제품 및 방송통신서비스의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1,500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신제품 홍보 등을 위한 전시회 등에 진열하기 위한 기자재	면제확인 수량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국제회의 및 국제경기대회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면제확인 수량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국내 시장조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견본품용 기자재	3대
외국의 기술자가 국내산업체 등의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내에 반출하는 조건으로 반입하는 기자재	면제확인 수량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유지·보수를 위해 제조 또는 수입되는 동일한 구성품 또는 부품	면제확인 수량
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자재	면제확인 수량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	1대
그 밖에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적합성평가의 면제가 필요한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자재	면제확인 수량

- 국내에서 판매하지 아니하고 수출 전용으로 제조하는 경우

면제대상 기자재	면제수량
국내에서 제조하여 외국에 전량 수출할 목적으로 제조하는 기자재	제한 없음
외국에 재수출하거나 외국에 납품할 목적으로 국내 반입하는 기자재	면제확인 수량
외국에 수출한 제품으로서 수리 또는 보수를 위해 반출을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기자재	면제확인 수량
국외에서만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자재	면제확인 수량

- 디스플레이 방식의 요구조건

- 사용자에게 전자적 표시(e-labelling)를 사용한 제품임을 포장재 또는 사용자설명서에 명시
- 사용자가 별도의 장치 또는 부대용품(예 : SIM, USIM 등)을 사용하지 않고 전자적으로 저장된 정보에 접근 가능
- 사용자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특정한 안내문을 반드시 제공

- QR코드 방식의 요구조건

-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의 홈페이지는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의 책임 하에 운영 및 관리되어야 하며, 적합성평가표시 정보의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보장
- 국가통합마크 및 식별부호를 QR코드의 내부 또는 테두리의 밖에 인접하여 상, 하, 좌, 우 중 적절한 위치에 눈에 잘 보이도록 표시
- QR코드를 인식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품의 디자인에 따라 기본도안의 크기와 색깔을 적절히 변경하여 사용 가능

【관련 규정】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표5]

적합성평가표시 생략

- 제품 디자인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적합성평가 정보' 표시가 곤란할 경우
 - ▶ 사용자설명서 또는 전자적 방식(e-labeling)으로 표시
- 단면적이 최대 400mm² 이하인 소형의 제품의 경우
 - ▶ 제품의 표장에 표시하거나 제품에 기본도안 또는 식별부호만 표시 가능
- 적합성평가 신청 시 기재한 모델명과 제품의 판매·홍보 시에 사용하는 모델명이 동일한 경우
 - ▶ 국가통합인증마크와 모델명만 기재
 - ※ 모델명은 식별부호의 위치에 표시하여야 하며, 사용자설명서에는 식별부호와 적합성평가 정보를 모두 기재
- 제품의 표면에 적합성평가 표시를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예: 체내 이식형 심장박동기 등)
 - ▶ 제품의 포장에만 표시
- 투명 포장재를 사용하여 포장상태에서 제품의 적합성평가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 포장에 적합성평가표시를 생략
- 수입자의 경우에는 구매자가 직접 제품 표면에 적합성평가표시를 부착할 수 있도록 스티커 등을 제공하는 경우
 - ▶ 제품에는 적합성평가표시를 생략

【관련 규정】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표5]



- 잠정인증을 하는 때 잠정인증을 요청하는 자가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지정시험기관의 시험 결과를 제출한 경우

면제대상 기자재	면제수량
법 제58조의2제7항에 따른 잠정인증을 요청한 자가 해당 기자재에 대한 법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시험결과를 제출하여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잠정인증을 위한 기술기준과 적합성평가기준이 모두 같은 기자재	제한 없음
법 제58조의2제7항에 따른 잠정인증을 요청한 자가 해당 기자재에 대한 법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시험결과를 제출하여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잠정인증을 위한 기술기준과 적합성평가기준이 일부 같은 기자재	잠정인증을 위한 기술기준과 적합성 평가기준이 같은 기자재의 수량

- 관계 법령에 따라 이 법에 준하는 전자파장해 및 전자파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면제대상 기자재	면제수량
법 제58조의2제7항에 따른 잠정인증을 요청한 자가 해당 기자재에 대한 법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시험결과를 제출하여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잠정인증을 위한 기술기준과 적합성평가기준이 일부 같은 기자재	제한 없음

- 그 밖에 면제 대상 기자재

면제대상 기자재	면제수량
외국에 납품할 목적으로 주문제작하는 선박에 설치하기 위해 수입되는 기자재와 외국으로부터 도입, 임대, 용선 계약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설치된 기자재등과 또는 이를 대체하기 위한 동일기종의 기자재	면제확인 수량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본인 자신이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 또는 조립하거나 반입하는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	면제확인 수량
적합성평가를 받은 컴퓨터 내장 구성품으로 조립한 컴퓨터 (다만, 소비자 안내문을 표시한 것)	제한 없음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조명 기기류, 멀티미디어 기기류의 기자재 중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것으로서, 소비자 안내문을 표시하고 과학실습용(코딩교육 목적 등)으로 사용되는 조립용품 세트(다만, 무선 송·수신용 부품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부품이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제한 없음

면제 확인(신청)서 생략 대상 기자재

-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기자재 1대
- 국내에서 제조하여 외국에 전량 수출할 목적의 기자재
- 관계 법령*에 따라 이 법에 준하는 전자파장해 및 전자파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 산업표준화법, 자동차관리법, 의료기기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 적합성평가를 받은 컴퓨터 내장 구성품으로 조립한 컴퓨터(다만, 소비자 안내문을 표시한 것)
-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조명기기류, 멀티미디어 기기류 기자재 중 USB 또는 건전지 (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것으로서, 소비자 안내문을 표시하고 과학실습용 (코딩교육 목적 등)으로 사용되는 조립용품 세트 (다만, 무선 송·수신용 부품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부품이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관련 규정】 전파법 제58조의 3, 시행령 제77조의7제1항 별표 6의2, 고시(제2020-7호) 제19조





7

적합성평가 제도 FAQ

Q1) 적합성평가와 관련된 법령, 고시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A1) 적합성평가와 관련된 법령 및 고시는 전파법, 전파법시행령,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 평가에 대한 고시가 있습니다. 적합성평가와 관련된 법령, 고시는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를 받을 경우 유효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A2)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적합성평가를 해지하거나 관계기관이 적합성평가를 취소하기 전에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는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Q3) 하나의 포장에 여러 종류의 제품이 들어있는 경우에 적합성평가 표시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A3) 포장의 표시방법은 최소 포장 단위로 하며, 하나의 포장에 여러 종류의 제품이 들어있는 경우에는 그 중 주 기능을 가진 제품의 식별부호를 선택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표5]

Q4) 적합성평가 제외 대상은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A4) 적합성평가 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의 기자재 중 정격입력이 10kW를 초과하는 기자재
2.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조명기기류 또는 멀티미디어 기기류의 기자재 중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것으로서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과학 실습용으로 사용되는 조립용품 세트(키트)
3. 디지털 장치류에 해당하는 기자재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기자재
 - 가. 능동 전자회로의 증폭기가 없는 헤드폰과 확성기(스피커)
 - 나. 적외선 통신방식의 원격제어기기(예 : TV 리모콘 등)
 - 다. 카메라 렌즈
 - 라. 배터리(보조배터리, 전자담배배터리 포함)
4.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조명기기류 또는 디지털 장치류의 기자재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기자재
 - 가. 단순 계산이나 계측용으로 사용하는 휴대용 전자계산기, 디지털체중계, 디지털온습도계, 디지털체온계, 디지털혈당계, 디지털수평계, 디지털멀티미터 또는 이와 유사한 기기
 - 나. 단순 시계기능만을 가진 전자시계
 - 다. 불을 붙이기 위해 사용되는 전기라이터
 - 라. 전동기(모터)를 사용하지 않으며, 일시적(2분미만)으로 빛과 소리만 나거나 빛 또는 소리만 나는 완구류 (어린이용 장난감)
 - 마. 단순 조명기능(단순 On/Off 및 점멸기능, 조명 밝기-색의 단순 조절 기능을 포함)만을 갖는 기자재 또는 이와 유사한 기자재
5. 멀티미디어 기기류에 해당하는 기자재 중 별도의 전원이 없이 1대 1로 접속되는 케이블, 케이블 연결기, 케이블약세서리

【관련 규정】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표1] 제11호 비고



7

적합성평가 제도 FAQ

Q5) 제품 사용설명서에도 적합성평가정보를 포함하여야 하나요?

A5) 적합성평가정보의 표시는 원칙적으로 제품과 포장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과 포장에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용자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표5]

Q6) KC마크 기본도안 파일은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A6) KC마크 도안 파일은 국립전파연구원(www.rra.go.kr) 홈페이지의 전파업무 메뉴에서 적합성평가제도 -> 적합성평가제도개요 -> 적합성평가표시 도안 클릭하시면 KC마크 도안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Q7) 파생모델이 있는 제품의 경우, 파생모델을 묶어서 신청이 가능하나요?

A7) 파생모델이 있는 경우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 신청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파생모델의 목록과 전기적인 회로·구조 및 부가적인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2020-7호) 제5조제3항, 제8조제2항

Q8) 적합인증을 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을 사용한 완제품의 적합성평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8) 적합인증을 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을 장착한 기자재의 경우, 무선 송·수신용 부품의 적합성평가 당시 적용된 시험항목의 시험성적서 및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 적합성평가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자파적합성기준 및 전자파흡수율 등에 대한 시험성적서는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2020-7호) 제20조

Q9) 외국의 인증(CE, FCC 인증 등)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국내에서 적합성평가를 면제할 수 있습니까?

A9) 외국에서 인증 받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국내기준에 적합하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외국(미국, EU, 캐나다, 베트남, 칠레)과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하여 국립전파연구원의 승인을 받은 해당 국가 MRA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는 국내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것과 동일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 <https://www.rra.go.kr>



참고

적합성평가 대상 기자재 별 인증 유형

1.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기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인증	적합등록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지정 시험기관	자기 시험
가. 디지털선택호출 장치의 기기	1)선박국용	○	○			○		
	2)해안국용	○	○			○		
나. 디지털선택호출 전용수신기	1)MF 전용수신기	○	○			○		
	2)MF·HF 전용수신기	○	○			○		
	3)VHF전용수신기	○	○			○		
다. 협대역 직접 인쇄 전신장치		○	○			○		
라. 해상이동업무용 디지털선택호출 장치의 기기	1) MF·HF 송수신장치	○	○			○		
	2)VHF송수신장치	○	○			○		
마. 수색구조용 위치 정보 송신장치의 기기	1)수색구조용 레이더 트랜스폰더	○	○			○		
	2)선박자동식별기능을 이용하는 송신기	○	○			○		
바. 네비텍스수신기		○	○			○		
사. 위성비상위치 지시용 무선표 설비의 기기	1)간이 항해 자료 기록장치 부착형	○	○			○		
	2)간이 항해 자료 기록장치 미부착형	○	○			○		
아. 초단파대양방향 무선전화장치		○	○			○		
자. 초단파대 해상이동업무용 무선설비		○	○			○		
차. 선상통신국의 무선설비		○	○			○		
카. 단축파대 무선전화장치의 기기 (해상이동업무의 기기)		○	○			○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인증	적합등록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지정 시험기관	자기 시험
파. 무선전화 경보 자동 수신기	1) 확성기 동작형	○	○			○		
	2) 가청경보기 동작형	○	○			○		
	3) 확성기 및 가청경보기 동작형	○	○			○		
하. 선박국용 레이더 기기	가) 표시면의 유효직경 32cm이상	○	○			○		
	1) 국제 항해용 나) 표시면의 유효직경 25cm이상 32cm미만	○	○			○		
	다) 표시면의 유효직경 18cm이상 25cm미만	○	○			○		
	2) 국내 항해용	○	○			○		
	3) 국내 소형선박용	○	○			○		
거. 무선방위 측정기	가) 중파무선방위 측정기	○	○			○		
	1) 의무 비치용 나) 중단파무선방위 측정기	○	○			○		
	다) 검용무선방위 측정기	○	○			○		
	가) 중파무선방위 측정기	○	○			○		
	2)임의 비치용 나) 중단파무선방위 측정기	○	○			○		
	다) 검용무선방위 측정기	○	○			○		
너. 라디오부이의 기기			○			○		
더. 자동식별 장치용 무선설비의 기기	1) 선박 자동식별장치	○	○			○		
	2) 항로표지용 자동식별장치	○	○			○		
	3) 해안국용 자동식별장치	○	○			○		
러. 단파대 디지털 송수신 장치	1) 해안국용	○	○			○		
	2) 선박국용	○	○			○		



2.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기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인증	적합등록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지정 시험기관	자기 시험
가. 의무항공기국에 시설하는 무선설비의 기기	○	○				○		

3.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기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인증	적합등록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지정 시험기관	자기 시험
가. 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1) 일반업무용	○	○		○		○		
2) 마을 공지사항 안내용	○	○				○		
나. 무선탐지업무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다. 산업 및 공공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라. 단축파대를 사용하는 무선설비의 기기 (육상이동업무의 기기)	○	○				○		
마. 기상원조용 무선설비								
1) 라디오존데 기기		○				○		
2) 라디오로보트 기기		○				○		
바. 무선호출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사. 주파수공용 통신용 무선 설비의 기기								
1) 육상용	○	○		○		○		
2) 해상용	○	○		○		○		
3) 중계 장치 및 이동 중계국 송수신기	○	○				○		
아. 방송제작 및 공연지원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자. 비상통신 보조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차. 해양경비안전망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인증	적합등록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지정 시험기관	자기 시험
아. 방송제작 및 공연지원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자. 비상통신 보조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차. 해양경비안전망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카.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								
1) 이동국의 송수신장치	○	○		○		○		
2) 육상국의 송수신장치 및 중계장치	○	○				○		
3) 핸드오프용 채널변환 장치	○	○				○		
4) 기타	○	○				○		
타. 해상조난자 위치발신용 무선설비	○	○				○		
파. 지능형교통 시스템용 무선 설비								
1)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	○				○		
2) 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치 (10mW/MHz 이하인 경우에는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에 해당)	○	○				○		

※ 비고
전자파흡수율 기준 적용 대상기자재는 안테나공급전력이 20mW를 초과하고 통상 이용 상태에서 전파 방사 중심점이 인체로부터 20cm 이내에 위치하는 휴대용 송신 무선설비(무선설비를 내장한 방송통신기자재를 포함한다)에 한하여 적용한다.



4.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기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인증	적합등록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지정 시험 기관	자기 시험
가. MCA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1) 육상이동국의 송수신 장치	○	○	○	○			
	2) 기지국의 송수신 장치 및 중계장치	○	○		○			
	3) 컴퓨터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4) 핸드오프용 채널변환 장치	○	○		○			
	5) 기타	○	○		○			
나. 개인휴대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1) 육상이동국의 송수신 장치	○	○	○	○			
	2) 기지국의 송수신 장치 및 중계장치	○	○		○			
	3) 컴퓨터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4) 핸드오프용 채널변환 장치	○	○		○			
	5) 기타	○	○		○			
다. IMT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1) 육상이동국의 송수신 장치	○	○	○	○			
	2) 기지국의 송수신 장치 및 중계장치	○	○		○			
	3) 컴퓨터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4) 핸드오프용 채널변환 장치	○	○		○			
	5) 기타	○	○		○			
라.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1) 육상이동국의 송수신 장치	○	○	○	○			
	2) 기지국의 송수신 장치 및 중계장치	○	○		○			
	3) 컴퓨터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4) 핸드오프용 채널변환 장치	○	○		○			
	5) 기타	○	○		○			
마. 협대역 사물 인터넷 (NB-IoT) 무선설비의 기기	1) 육상이동국의 송수신 장치	○	○	○	○			
	2) 기지국의 송수신 장치 및 중계장치	○	○		○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인증	적합등록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지정 시험 기관	자기 시험
마. 협대역 사물 인터넷 (NB-IoT) 무선설비의 기기	3) 컴퓨터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4) 핸드오프용 채널변환 장치	○	○			○		
	5) 기타	○	○			○		
바.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28 GHz)	1) 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치	○	○		○	○		
	2)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및 중계장치	○	○		○	○		
	3) 기타	○	○		○	○		
사.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3.5 GHz)	1) 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치	○	○		○	○		
	2)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및 중계장치	○	○		○	○		
	3) 기타	○	○		○	○		
아. 긴급무선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자. 무선호출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차. 위성휴대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카. 무선데이터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타. 주파수공용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1) 육상용	○	○		○	○		
	2) 해상용	○	○		○	○		
	3) 중계장치 및 이동중계국의 송·수신기기	○	○		○	○		
파. 해상이동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하. 휴대인터넷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거. 위치기반서비스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너. 가입자회선용 무선설비의 기기	1) 2.3GHz 주파수 대역	○	○			○		
	2) 26GHz 주파수 대역	○	○			○		

※ 비 고
전자파흡수율 기준 적용 대상기자재는 안테나공급전력이 20mW를 초과하고 통상 이용 상태에서 전파 방사 중심점이 인체로부터 20cm 이내에 위치하는 휴대용 송신 무선설비(무선설비를 내장한 방송통신기자재를 포함한다)에 한하여 적용한다.



5.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인증	적합등록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지정 시험기관	자기 시험
가.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나. 미약 전계강도 무선기기	○	○				○		
다. 자체유도식 무선기기	○	○				○		
라. 특성소출력 무선기기	1) 무선조정용 무선기기	○	○		○			
	2) 데이터전송용 무선기기	○	○		○			
	3) 안전시스템용 무선기기	○	○		○			
	4) 음성 및 음향신호 전송용 무선기기	○	○			○		
	5)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 시스템용 무선기기	가)5150~5350MHz, 5470~5850MHz 주파수 대역	○	○	○	○		
		나)5925~6425MHz 주파수 대역	○	○	○	○		
		다)5925~7125MHz 주파수 대역	○	○	○	○		
	라)17700~17740MHz, 19260~19300MHz 주파수 대역	○	○			○		
	6) 중계용 무선기기	○	○			○		
	7) 차량 충돌방지용 레이더 무선기기	○	○			○		
	8)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	○	○		○		
	9) 이동체식별용 무선기기	○	○				○	
	10) 소형기저국용 무선기기	○	○			○		
11) 도로정보감지레이더용 무선기기	○	○			○			
12) 지능형교통시스템용 무선기기 (10mW/MHz 이하의 기기만 해당)	○	○			○			
13)재난경보방송용 무선기기	○	○			○			
마. RFID용 무선기기	1) 900MHz 주파수 대역	○	○	○	○			
	2) 433MHz 주파수 대역	○	○			○		
	3) 13.56MHz 주파수 대역	○	○			○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인증	적합등록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지정 시험기관	자기 시험
바. USN용 무선기기	1) 917MHz ~ 923.5MHz 주파수 대역	○	○					○
	2) 940.1MHz ~ 946.3MHz 주파수 대역	○	○					○
	3) 1.7GHz 주파수 대역	○	○					○
	4) 940.1MHz ~ 944.3MHz 주파수 대역 (간섭회피 기술 등 사용)	○	○					○
사. 코드없는 전화기	1) 1.7GHz 주파수 대역	○	○	○		○		
	2) 2.4GHz 주파수 대역	○	○	○		○		
아. UWB 기술을 사용하는 기기		○	○					○
자. 용도미지정 무선기기	1) 262MHz ~ 264MHz 주파수 대역	○	○					○
	2) 22GHz ~ 23.6GHz 주파수 대역	○	○					○
	3) 57GHz ~ 66GHz 주파수 대역	○	○					○
	4) 122GHz ~ 123GHz 주파수 대역	○	○					○
	5) 244GHz ~ 246GHz 주파수 대역	○	○					○
차. 체내이식 무선 의료기기		○	○					○
카. 물체감지 센서용 무선 기기	1) 5.8GHz 주파수 대역	○	○					○
	2) 10GHz 주파수 대역	○	○					○
	3) 24GHz 주파수 대역	○	○					○
타. TVWS 데이터 통신용 무선 설비의 기기	1) 고정형 기기	○	○					○
	2) 이동형 기기	○	○					○
파. 레벨측정 레이더용 무선기기	1) 차폐된 구조물에서 사용하는 기기	○	○					○
	2) 76 ~ 81GHz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레벨측정레이더	○	○					○

※ 비 고

- 라목 2), 8), 마목의 기자재 중 제조 또는 생산 공정에 사용되는 산업용 기자재의 경우,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을 수 있다.
- 제1호에 따라 적합등록을 받은 자는 해당 기자재의 포장 또는 사용자 설명서 일면에 다음의 안내문을 표시하여야 한다.

해당 제품은 제조 또는 생산공정에 사용되는 산업용기자재로서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라 적합성평가(적합등록)를 받은 무선설비의 기기입니다.
- 전자파흡수율 기준 적용 대상기자재는 안테나공급전력이 20mW를 초과하고 통상 이용 상태에서 전파 발산 중심점이 인체로부터 20cm 이내에 위치하는 휴대용 송신 무선설비(무선설비를 내장한 방송통신기자재를 포함한다)에 한하여 적용한다.
- 라목 5), 8)의 기자재 중 전자파흡수율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기자재는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을 수 있다
- 라목 5)의 5925~6425MHz, 5925~7125MHz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무선기자재 중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을 적용하는 기자재는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 또는 「전자파강도 측정기준」 중 어느 하나를 적용할 수 있다.



6. 기타 무선설비의 기기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인증	적합등록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지정 시험 기관	자기 시험
가. 고주파전류를 이용하는 의료용설비의 기기	○	○				○		
나. 아마추어 무선 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1) HF대 기기	○	○				○		
2) VHF/UHF대 기기 등	○	○				○		

7. 단말장치 기기(방송통신설비의 기기)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인증	적합등록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지정 시험 기관	자기 시험
가. 시스템류								
1) 교환시스템 (전화, 데이터, PBX, ATM, 키폰 등)	○		○				○	
2) 자동음성처리 및 전자사서함시스템	○		○				○	
3) 자동착신방식(DID) 기능이 있는 멀티미디어 서버	○		○				○	
4) 유선통신시스템 부속물류	○		○					○
5)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시스템류	○		○				○	
나. 회선종단 장치류								
1) 채널서비스유닛(CSU)기능을 가진 기기	○		○				○	
2) 초고속, 기가급 디지털 가입자 회선종단장치	○		○				○	
3) 원거리(WAN) 전송장치 (64kbps이하 2,048kbps-44,736kbps 회선에 접속되는 장치)	○		○				○	
4) PCM단국장치	○		○				○	
5)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회선종단 장치류(1,544kbps- 155,520kbps 인터페이스 등)	○		○				○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인증	적합등록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지정 시험 기관	자기 시험
다. 단말기류								
1) 비상통보기기 (화재, 가스, 침입, 장치고장 등의 통보를 위한 장치 등)	○		○					○
2) 광선로 설비에 접속되는 단말장치 (EPON, GPON, 광모뎀 등)	○		○					○
3) 원격검침용 통신기기	○		○					○
4) 전화기류 (전화기, 회의용 브릿지, 회선어댑터, 번호표시기, 착신표시기, 통화감지기, 통화시간기록기, 자동다이얼기, 장거리자동 전화발신제어기, 착신전화기, 자동응답기 등)	○		○					○
5) 팩시밀리기기(전화기 부가기능을 가진 기기 포함)	○		○					○
6) 전화기능을 내장한 복합단말기기 (홀로트메이션,비디오어폰 등)	○		○					○
7) 공중전화회선을 이용한 데이터전송 및 검색 단말기	○		○					○
8) 모뎀	○		○					○
9) 팩시밀리 모뎀 (모뎀형식 포함)	○		○					○
10) 근거리데이터채널 모뎀 (원격통신용, LADC)	○		○					○
11) 신용카드조회 단말기기	○		○					○
12) 모뎀을 내장한 특정한 용도의 단말기기 (금융단말기기, 정보검색용 단말기기, 현금자동취급기 등)	○		○					○
13) PC에 장착되는 정보통신 단말기기	○		○					○
14) 아날로그 통신망에 사용되는 데이터보호기기	○		○					○
15) 원격제어기기	○		○					○
16) 통신설비 유지 보수용 시험기기	○		○					○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인증	적합등록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지정 시험 기관	자기 시험
다. 단말기기류								
17) 회선장애 감시기기	○		○					○
18) 디지털가입자회선 설비에 접속되는 단말장치 (ADSL, VDSL, GDSL 모뎀 등)	○		○					○
19) 기타 디지털 단말장치(VoIP 게이트웨이 기능을 내장하고 사업자망에 접속하는 인터넷 전화기, 라우터, 5Gbps /10Gbps 단말장치 등)	○		○					○
20) 광동축혼합설비에 접속되는 데이터 통신용 단말장치(케이블 모뎀 등)	○		○					○
21) 공중전화기	○		○					○
22) ISDN 망중단기기(NTE)	○		○					○
23) ISDN 단말기기 (ISDN 전화기, 터미널 어댑터, 인터페이스 카드 등)	○		○					○
24) ISDN 다기능기기 (ISDN 영상기기, ISDN 복합 단말기기, G4 팩시밀리, ISDN 라우터 등)	○		○					○
25) 접속 커넥터			○					○
26)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의 영상정보 처리기기(IP카메라, 폐쇄회로TV, 네트워크 비디오녹화기 등)	○		○					○
27) 가입자보호기(전화용)			○					○
28) 기타 분류되지 아니한 단말기기류	○		○					○

8. 유선방송국 설비의 기기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인증	적합등록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지정 시험 기관	자기 시험
가. 종합유선 방송국 주전송 장치류								
1) 진폭변조기	○		○					○
2) 주파수변조기	○		○					○
3) 디지털변조기 (64QAM, 256QAM, QPSK)	○		○					○
4) 텔레비전 신호처리 (아날로그방식, 디지털 방식, 디지털 지상파 재전송용 변조기)	○		○					○
5)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종합 유선방송국 주전송장치류	○		○					○
나. 종합유선방송 가입자 단말장치 (디지털CATV 셋톱박스 등)	○		○					○

9.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방송통신설비의 기기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인증	적합등록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지정 시험 기관	자기 시험
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가입자 단말장치 (IPTV 셋톱박스 등)	○		○					○



10.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기기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인증	적합등록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지정 시험기관		자기 시험
가. 증폭기	○		○				○		
나. 레벨조정기	○		○				○		
다. 광 송신기 및 수신기	○		○				○		
라. 광 증폭기	○		○				○		
마. 신호처리기	○		○				○		
바. 분기기			○					○	
사. 분배기			○					○	
아. 동축케이블			○					○	
자. 보호기			○					○	
차. 가입자보호기(CATV)			○					○	
카. 광분배기			○					○	
타. 광케이블			○					○	
파. 직렬단자			○					○	
하.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방송 공동수신설비류	○		○				○		

11.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기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인증	적합등록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지정 시험기관		자기 시험	
가. 산업·과학·의료용 등으로 사용하는 고주파이용 기기류 : 산업·과학·의료 및 가정용으로 고주파 에너지를 발생하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이용하도록 설계된 장치 및 기기류 (*전자파법 제5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전파응용 설비는 제외)	1) 산업용 고주파 이용 기기류	○						○		
	2) 과학용 고주파 이용 기기류	○						○		
	3) 의료용 고주파 이용 기기류	○						○		
	4) 가정용 고주파 이용 기기류	○						○		
	5) 전기용접기류 (총형 아크접착기 포함)	○							○	
나. 자동차 및 내연기관 구동기기류 : 전파통신이나 방송 수신 등에 방해가 되는 자동차 및 내연기관 구동 기기류 (*「자동차관리법」에서 구분한 이륜자동차 중 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기기는 대상에서 제외)	1) 자동차 기기류	○							○	
	2) 자동차 장착용 디지털 기기류 (자동차전장품)	○							○	
	3) 전자식 운행기록계	○							○	
다. 전자기기 및 전동기기류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1) 방폭형인 것 2) 전기매트, 전기뚝질기, 안면사우나기, 적외선·자외선방사 피부관리기, 전기마사지기, 전기스팀사우나기기, 반신욕조 및 발욕조 중 「의료기기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인 것	1) 전기청소기 (진공청소기, 물흡입청소기, 전기 바닥청소기, 전기표면 세척기, 스팀청소기)	○							○	전동기의 정격 입력이 2.5kW를 초과하는 것은 자기시험적합등록 대상
	2) 전기다리미 및 전기 프레스기 (전기건조다리미, 스팀다리미, 바지프레스기, 주름펴기, 다림질프레스)	○							○	
	3) 전기식기세척기 및 전기식기건조기	○							○	전동기의 정격 입력이 1kW를 초과하는 것은 자기시험적합등록 대상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인증	적합등록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지정 시험기관		자기 시험
다.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1) 방폭형인 것 2) 전기매트, 전기뜸질기, 안면사우나기, 적외선·자외선방사 피부관리기, 전기마사지기, 전기스팀사우나기, 반신욕조 및 발욕조 중 「의료기기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인 것	○			○		○		전자파강도는 유도 가열(HI)방식 제품에만 적용	
4) 주방용전열기구 (전기레인지, 전기오븐, 전기그릴, 전기호브, 전기콘로, 전기가열기, 전기 토스터, 전기 프라이팬, 전기고기 구이, 와플기, 핫플레이트)									
5) 전기세탁기 및 탈수기	○					○		세탁기 전동기의 정격입력이 1kW를 초과하는 것과 전기탈수기 드럼 속도가 50m/s를 초과하는 것은 자기시험적합등록 대상	
6) 모발관리기 (모발건조기, 전기머리인두, 모발 말개)	○					○			
7) 전기보온기 및 전기 온장고, 전기주온기	○					○			
8) 주방용 전동기기 (주서, 주서믹서기, 후드믹서, 전기녹즙기, 크림거품기, 계란반죽기, 혼합기, 버터제조기, 압축기, 슬라이스, 전기칼칼 이, 전기깡통따개, 전기칼, 커피분쇄기, 빙삭기, 전기고기갈개, 전기곡수제조기, 전기 육절기, 전기골절기 및 기타 주방용 전동기기)	○					○		전동기의 정격 입력이 1kW를 초과하는 것은 자기시험적합등록 대상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인증	적합등록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지정 시험기관		자기 시험
다.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1) 방폭형인 것 2) 전기매트, 전기뜸질기, 안면사우나기, 적외선·자외선방사 피부관리기, 전기마사지기, 전기스팀사우나기, 반신욕조 및 발욕조 중 「의료기기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인 것	○			○		○		전자파강도는 유도 가열(HI)방식 제품에만 적용	
9) 전기액체 가열기기 (전기밥솥, 전기보온 밥솥, 전기주전자, 전기냄비, 전기물 끓이기, 전기약탕기, 커피메이커, 전기스팀쿠커, 달걀조리기, 우유 가열기, 젓병가열기, 요구르트제조기, 증기조리기 등 기타 전기액체 가열기기)									
10)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전기방석, 전기카펫, 전기장판, 전기요 포함)	○					○		전자파강도는 직류 전원 사용 제품은 제외	
11) 전기찜질기	○						○		
12) 발 보온기 및 전기 손난로	○						○		
13) 전기온수기(끓는 점 이하의 온도로 유지 하는 것 및 전기순간 온수기)	○						○		
14) 전기냉장·냉동 기기 (제빙기, 아이스크림 프리저, 전기냉수기 포함)	○						○	전동기의 정격 입력이 1kW를 초과하는 것은 자기시험적합 등록 대상	
15) 전자레인지 (300MHz ~ 30GHz 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것에 한함)	○						○		
16) 가정용 전동재봉기	○						○		
17) 전기충전기	○						○	출력전압이 50V를 초과하는 것은 자기시험 적합등록 대상	
18) 전기건조기 (회전형 전기건조기, 손건조기 포함)	○						○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인증	적합등록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지정 시험기관		자기 시험
다.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1) 방폭형인 것 2) 전기매트, 전기뜸질기, 안면사우나기, 적외선·자외선방사 피부관리기, 전기마사지기, 전기스팀사우나기, 반신욕조 및 발욕조 중 「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인 것	19) 전열기구 (전기스토브, 전열보드, 전기라디에이터, 전기온풍기, 전기난방기)	○					○		
	20) 전기맛사지기	○					○		
	21) 냉방기 및 제습기 (열교환펌프 또는 에어컨 그 밖의 컴프레서가 내장된 것에 한함)	○					○		
	22) 유체펌프 (전기온수펌프 포함) ※ 진공펌프, 오일펌프, 샌드펌프 및 기계구에 부착되는 특수 구조인 것은 대상에서 제외	○					○	여과기능이 내장된 펌프를 포함하며, '사용 액체의 온도가 90°C 이하이고 정격입력이 1.5kW 이하'이외의 기기는 자기시험 적합등록 대상	
	23) 전기사우나기기 (전기스팀사우나기기 및 사우나용 전열기 포함)	○					○		
	24) 전기욕조 (독립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욕조기포 발생기 포함)	○					○		
	25) 공기청정기 (기계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대상에서 제외)	○					○	정격입력이 500W를 초과하는 것은 자기시험 적합등록 대상	
	26) 자동판매기	○					○		
	27) 팬, 레인지후드 (선풍기, 송풍기, 환풍기, 레인지후드, 전기냉풍기) ※ 기계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대상에서 제외	○					○	정격입력이 500W를 초과하는 것은 자기시험 적합등록 대상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인증	적합등록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지정 시험기관		자기 시험
다.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1) 방폭형인 것 2) 전기매트, 전기뜸질기, 안면사우나기, 적외선·자외선방사 피부관리기, 전기마사지기, 전기스팀사우나기, 반신욕조 및 발욕조 중 「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인 것	28) 화장실용 전기기기 (자동세정 건조식변기, 전기변좌, 오물흡입기)	○					○		
	29) 가습기	○					○		
	30) 음식물처리기 (음식물처리기 중 음식물 분쇄기의 경우에는 「하수도법」에서 제조·수입·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음)	○					○		
	31) 전기용해기 (약용해기, 초코렛용해기, 파라핀용해기)	○					○		
	32) 이마용기 (전기머리손질기, 두피모발기, 샴푸기기, 모발가습기, 손톱정리기, 전기면도기, 전기이발기, 안면 사우나기)	○					○		
	33) 적외선·자외선 방사 피부관리기	○					○		
	34) 전기의자 및 전동침대	○					○		
	35) 전기온수매트 (전기보일러, 전기온수침대 포함)	○					○		
	36) 구강청결기 (전동칫솔, 구강세척기)	○					○		
	37) 해충퇴치기 및 전기포충기	○					○		
	38) 전기집진기	○					○		
	39) 착유기	○					○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등록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지정 시험 기관		자기 시험
다.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1) 방폭형인 것 2) 전기매트, 전기뜸질기, 안면사우나기, 적외선·자외선방사 피부관리기, 전기마사지기, 전기스팀사우나기, 반신욕조 및 발욕조 중 「의료기기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인 것	○					○		
40) 서비스기기 (전기광택기, 수하물 보관기, 지폐 및 동전 교환기)								
41) 전기에어컨	○					○		
42) 팬코일유닛 (Fan coil unit)	○					○		
43) 폐열 회수 환기장치	○					○		
44) 게임기구 (레이저사격기, 운전 시뮬레이션게임기구, 인형뽑기, 다트판, 동구게임기 및 기타 게임기구)	○					○		
45) 전동형 롤스크린	○					○		
46) 전기훈증기 (전기훈증살충기, 전기방향확산기)	○					○		
47) 보풀제거기	○					○		
48) 산소이온발생기	○					○		
49) 전기정수기 (전기이온수기 포함)	○					○		
50) 초음파세척기 (과일아채세척기 포함)	○					○		
51) 전동공구 (전기드릴, 전기 드라이버, 전기 그라인더, 포리서, 전기샌더, 전기톱, 전기햄머, 전기금속 가위, 전기테이퍼, 전기전동기, 전기 대패, 전기잔디깎기, 전기못총, 트리밍기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전동공구)	○					○	정격입력이 1.5kW를 초과하는 것은 자기시험 적합등록 대상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등록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지정 시험 기관		자기 시험
다.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1) 방폭형인 것 2) 전기매트, 전기뜸질기, 안면사우나기, 적외선·자외선방사 피부관리기, 전기마사지기, 전기스팀사우나기, 반신욕조 및 발욕조 중 「의료기기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인 것	○					○		
52) 이동수단용 전동기기 (전동자전거, 전동 보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이동 수단용 전동기기)								
53) 전기가열기기 (납땀인두, 납땀제거 인두, 권총형납땀기, 열가소성도관용 접기, 필름접착기, 플라스틱절단기, 페인트제거기, 가열총, 전기조각기)	○					○		
54) 관상 및 애완용 전기기기 (관상어용·식물용 히터, 동물부화 사육용 히터, 관상 어용 기포발생기, 전기어항)	○					○		
55) 기포발생기기	○					○		
56) 전격살충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대상에서 제외)	○					○		
57) 전기분무기	○					○		
58) 전기소독기	○					○		
59) 물수건 마는 기기 및 포장기기	○					○		
60) 과일껍질깎기	○					○		
61) 감자탈피기	○					○		
62) 전기정미기	○					○		
63) 전기빵자르개	○					○		
64) 애완동물 목욕기	○					○		
65) 전기주류속성기	○					○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인증	적합등록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지정 시험기관		자기 시험
다.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66) 전기시계	○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1) 방폭형인 것									
2) 전기매트, 전기뜸질기, 안면사우나기, 적외선·자외선방사 피부관리기, 전기마사지기, 전기스팀사우나기, 반신욕조 및 발욕조 중 「의료기기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인 것									
67) 컴프레서	○						○		
68) 전기분수기	○						○		
69) 투영기 (슬라이드 투영기, 필름스트립투영기, OHP, 필름 투영기)	○						○		
70) 수도동결방지	○						○		
71) 새싹 및 콩나물 재배기	○						○		
72) 전기작동 도어록	○						○		
73) 전기장난감	○						○		
74) 전기헬스기구	○						○		
라. 조명기기류									
1) 일반 조명기구 (9㎓부터 400㎓까지 주파수대에서의 형광등 및 조명기능을 가지는 기구 또는 장치	○						○		
2) 안정기 및 램프 제어 장치[자가식안정기, 전자식안정기, 네온 변압기, 네온변압기 조명기구용 컵버터 (LED전원공급장치 포함)]	○						○		
3) 안정기내장형램프 (LED용 포함)	○						○		
4) 기타 조명기구 (크리스마스트리용 조명기구, 충전식휴대 전등, 조광기)	○						○		
마. 전기철도기기류									
(전기철도차량, 전원장치, 제어장치 등 전기철도 차량 내 기기, 주행제어를 위한 신호기기 및 전기 통신기기, 그 밖의 고정전원시설)	○						○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인증	적합등록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지정 시험기관		자기 시험
바. 전력선통신기기류									
(전선로에 주파수가 9㎓ 이상의 전류가 통하는 통신설비의 기기)									
※ 「전파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파응용 설비는 대상에서 제외	○						○		
사. 무정전 전원장치	○						○		
아. 저압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1) 전자식 스위치 (리모트콘트롤 스위치, 시간지연스위치, 타이머·타이머스위치 포함)									
2) 전자개폐기	○						○		
3) 전자식 온도조절기									
4) 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용 스위치 및 개폐기									
자. 멀티미디어 기기류									
1) 텔레비전수상기	○						○		
2) 영상모니터	○						○		
3) 비디오테이프 플레이어	○						○		
4) 비디오키메라	○						○		
5) 튜너	○						○		
6) 편집기	○						○		
7) 디스크플레이어	○						○		
8) 라디오수신기	○						○		
9) 앰프(앰프내장 형스피커 포함)	○						○		
10) 리시버	○						○		
11) 음성기록계	○						○		
12) 음성플레이어	○						○		
13) 오디오시스템	○						○		
14) 전자악기	○						○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등록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적합인증	지정 시험 기관	
자. 멀티미디어 기기류 : 방송수신기기 및 오디오·비디오 관련 기기, 정보·사무 기기 ※방송수신기기 및 오디오·비디오 관련 기기: 9kHz부터 400GHz까지의 주파수 범위 내의 방송 또는 유사정보를 수신하기 위한 음성 및 텔레비전 수신기와 이에 직접 연결되어 음성 또는 시각정보를 생성하거나 재생하기 위한 기기(기계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대상에서 제외)	15) 위성방송수신기	○					○	
	16) 비디오게임기구	○					○	
	17) 비디오폰	○					○	
	18) TV 영상프로젝터	○					○	
	19) 음질조정기 (이퀄라이저 포함)	○					○	
	20) 오디오프로세서	○					○	
	21) 신호변환장치 (AD/DA)	○					○	
	22) 음성 및 영상분배기	○					○	
	23) 컴프레서 게이트	○					○	
	24) 전자시계	○					○	
	25) CCTV 카메라	○					○	
	26) 영상전송기	○					○	
	27) 영상수신기 및 변환기	○					○	
	28) 영상기록계	○					○	
	29) A/V 신호수신기	○					○	
	30) 영상프로세서	○					○	
	31) 오디오 및 비디오 학습기	○					○	
	32) 턴테이블	○					○	
	33) 컴퓨터류	○					○	
	34) 컴퓨터 주변기기류 [입력장치 (스캐너, 키보드 등), 출력장치 (모니터, 복사기, 프린터, 프로젝터 등), 외장형 저장장치, 컨트롤러류 및 기타 컴퓨터 주변기기류]	○					○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등록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적합인증	지정 시험 기관	
자. 멀티미디어 기기류 : 방송수신기기 및 오디오·비디오 관련 기기, 정보·사무 기기 ※방송수신기기 및 오디오·비디오 관련 기기: 9kHz부터 400GHz까지의 주파수 범위 내의 방송 또는 유사정보를 수신하기 위한 음성 및 텔레비전 수신기와 이에 직접 연결되어 음성 또는 시각정보를 생성하거나 재생하기 위한 기기(기계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대상에서 제외)	35) 컴퓨터 내장 구성품류 (보드류, 저장장치류, 전원공급기, 직류 전원장치, 컨트롤러류, 기타 컴퓨터 내장 구성품류)	○						○
	36) 기타 정보기기류	○						○
	37) 사무기기류 (코팅기, 지폐계수기, 전자저울, 금전등록기, 여학실습기, 문서 세단기, 전공기, 재단기, 제본기, 전자 칠판 및 보드, 동전 계수기, 전동타자기, 전기소자기, 교통 카드충전기, 번호표 발행기 및 기타 사무기기류)	○						○
	38) 휴대용 자동차 진단기	○						○
	39) 측정·검사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계측 설비 등의 기자재류 (제2조제1항제6호의 정보기기 정의를 포함하는 것에 한함)	○						○
	40) 디지털 장치류 :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기	○						○
차. 승강기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강기검사에서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적용하는 기기에 한함)	1) 전기식 엘리베이터 및 구성품류	○						○
	2) 유압식 엘리베이터 및 구성품류	○						○
	3) 에스컬레이터·무빙 워크 및 구성품류	○						○
	4) 기타 승강기 및 구성품류	○						○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등록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적합인증	지정 시험기관 자기 시험	
카. 소방용품 기기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성능 인증 대상기기에 한함)	1) 누전경보기(수신부)	○					○	
	2) 가스누설경보기	○					○	
	3) 수신기	○					○	
	4) 중계기	○					○	
	5) 감지기	○					○	
	6) 주거용주방자동 소화장치	○					○	
	7) 캐비닛형자동 소화장치	○					○	
	8) 가스·분말식 자동 소화장치	○					○	
	9) 고체에어로졸식자동 소화장치	○					○	
	10)기동용수압개폐장치	○					○	
	11) 상업용주방자동 소화장치	○					○	
	12) 자동차압·과압조절형 댐퍼	○					○	
	13) 자동폐쇄장치	○					○	
	14) 캐비닛형간이스프링 쿨러설비	○					○	
	15) 플랩댐퍼	○					○	
	16) 유도등	○					○	
	17) 비상조명등	○					○	
	18) 기타 소방기기류	○					○	
타. 전기자전거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의 2호의 정의에 해당되는 기기에 한하며 그 밖에 이동수단용 전동기기는 다목 52)로 분류)		○					○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등록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적합인증	지정 시험기관 자기 시험	
파. 전원공급장치 및 휴대전화 배터리 충전기 (범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특수설비에 내장되어 사용되는 구성품 또는 부품은 대상에서 제외)	○						○	
하.기타 기기류								
1) 가목, 다목, 라목, 사목, 아목, 자목, 파목의 기자재 중 산업용(제품의 제조 또는 생산공정 및 빌딩제어)으로 사용되는 기기류	○						○	
2)특정용으로 한정된 공간에서 사용하는 기자재류(주차차단장치)	○						○	
3)절연변압기 (전압조정기, 가정용소형 변압기, 교류어댑터)	○						○	
4)고전압 설비 및 그 부속기기류	○						○	
5)전기용품 보호용 부속 기기(케이블릴, 누전 차단기)	○						○	
6) 태양광발전용 전력변환기	○						○	
너. 그 밖에 특수조건인 기자재 등 원장이 인정하는 기자재 (다목, 라목, 자목 1)에서 32) 및 37)에 해당하는 기자재로 직류전원만을 사용하여 동작하는 기자재를 포함)	○						○	
더. 다목, 라목 또는 자목 40)에 해당하는 기자재로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기자재								
※ 비 고								
1. 다목에 해당하는 기자재 중 정격입력이 10kW를 초과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2. 다목, 라목 또는 자목의 기자재 중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것으로서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과학 실습용으로 사용되는 조립용품 세트(키트)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3. 자목 40)의 기자재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능동 전자회로의 증폭기가 없는 헤드폰과 확성기(스피커)								
나. 적외선 통신방식의 원격제어기기(예 : TV 리모콘 등)								
다. 카메라 렌즈								
라. 배터리(보조배터리, 전자담배배터리 포함)								



참고2

적합성평가 지정시험 기관 현황

No	시험기관명	주소 및 연락처	홈페이지
1	삼성전자(주) 제1시험기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129 TEL : 031-277-7746	www.samsung.com
2	(재)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경기도 군포시 흥안대로 27번길 22 TEL : 031-428-3705	www.ktc.re.kr
3	(주)에스케이테크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글개울로 81번길 88 TEL : 031-576-2204	www.skemc.co.kr
4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6길 87 TEL : 02-860-1452	www.ktl.re.kr
5	LG전자(주) MC 규격인증 Lab.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10길 22 TEL : 02-2033-1073	www.lgmobile.co.kr
6	(주)원택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진새골길 43-14 TEL : 031-799-9500	www.onetech.co.kr
7	엘지전자(주) 디지털미디어규격시험소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엘지로 222 TEL : 031-610-6646	www.lg.com
8	(주)비더블유에스텍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현로 480번길 23 TEL : 031-333-5997	www.bws.co.kr
9	(주)에스테크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억만리로 140-16 TEL : 031-631-8037	www.estech.co.kr
10	(주)이티엘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 2로 114 TEL : 02-858-0786	www.etl.re.kr
11	(주)한국기술연구소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사기소길 58-10 TEL : 031-763-6709	www.emc.re.kr
12	(주)씨티케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예지로 113 TEL : 031-339-9970	www.e-ctk.com
13	(주)넴코코리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오산로 159 TEL : 031-330-1700	www.nemko.com
14	(특)한국전파진흥협회 부설시험인증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68 TEL : 031-427-9100	www.rapatcl.or.kr
15	삼성전자(주) 제3시험기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129 TEL : 031-8062-4297	www.samsung.com
16	(재)한국화학융합시험 연구원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TEL : 02-2092-4071	www.ktr.or.kr

【관련 규정】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표1]

4. 더목의 기자재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가. 단순 계산이나 계측용으로 사용하는 휴대용 전자계산기, 디지털체중계, 디지털온습도계, 디지털체온계, 디지털혈당계, 디지털수평계, 디지털멀티미터 또는 이와 유사한 기기
 - 나. 단순 시계기능만을 가진 전자시계
 - 다. 불을 붙이기 위해 사용되는 전기라이터
 - 라. 전동기(모터)를 사용하지 않으며, 일시적(2분미만)으로 빛과 소리만 나거나 빛 또는 소리만 나는 완구류 (어린이용 장난감)
 - 마. 단순 조명기능(단순 On/Off 및 점멸기능, 조명 밝기-색의 단순 조절 기능을 포함)만을 갖는 기자재 또는 이와 유사한 기자재
5. 더목에 해당하는 전자파적합성 시험규격은 '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또는 '조명기기류'를 적용한다.
6. 「전파법」제58조의3 제1항제4호에 의거하여, 이 법에 준하는 전자파적합성에 관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면제할 수 있다.
 - 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품목
 - 나.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
 - 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용품
 - 라. 「의료기기법」에 따라 품목류별 또는 품목별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
7. 자목에 해당하는 기자재 중 별도의 전원이 없이 1대 1로 접속되는 케이블, 케이블연결기, 케이블악세서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17	(주)에이치시티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서이천로 578번길 74 TEL : 031-645-6300	www.hct.co.kr
18	구미대학교 산학협력단 전자파센터	경상북도 구미시 야은로 37 TEL : 054-440-1195	emc.gumi.ac.kr
19	(주)디티앤씨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림로 154번길 42 TEL : 031-321-2664	www.dtn.com
20	(주)케이씨티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원로 65 TEL : 031-326-6719	www.kctl.co.kr
21	(주)코스텍	경기도 화성시 세자로 406번길 28 TEL : 031-222-4251	www.kostec.org
22	(주)유씨에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익로 268 TEL : 1833-5681	www.ucs.co.kr
23	(주)표준엔지니어링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1길 38-9 TEL : 02-851-3644	www.stdeng.com
24	(주)엘티에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송주로 236번길 4 TEL : 031-323-6008	www.ltalab.com
25	(주)씨에스텍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당성로 520-5 TEL : 031-493-2001	www.cstlab.co.kr
26	(주)케이이에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65번길 40 TEL : 031-425-6200	www.kes.co.kr
27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연구단지로 76 TEL : 043-270-2732	www.cbtp.or.kr
28	(주)이엠씨랩스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장자터로 100 TEL : 031-637-8895	www.emclabs.co.kr
29	(주)스탠다드뱅크	경기도 군포시 군포첨단산업2로 48 TEL : 031-393-9394	www.standardbank.co.kr
30	(주)지에스티엘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경충대로 3233번길 89-5 TEL : 031-634-1800	www.gstl.co.kr
31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47 TEL : 031-724-0142	www.tta.or.kr
32	한국에스지에스(주)	경기도 군포시 엘에스로 182번길 4 TEL : 031-428-5700	www.sgsgroup.kr
33	모본(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금어로 498-2 TEL : 031-338-8837	www.movonlab.co.kr
34	엘지전자(주) 홀어플라이언스 전자파규격시험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성산패총로 170 TEL : 055-260-3966	www.lge.co.kr
35	(주)제이앤디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익로 282 TEL : 031-382-2277	www.jndcerti.com

36	(주)키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교동로118번길 30-1 TEL : 031-287-3570	www.keyco.co.kr
37	(주)규격인증센터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장덕동길 107-27 TEL : 031-356-7333	www.testlab.kr
38	경운대학교 산학협력단	경북 구미시 산동면 인덕리 55번지 TEL : 054-467-5082	www.iacf.ikw.ac.kr
39	(주)엔트리연구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천로 44번길 30 TEL : 031-893-1000	www.ntree.or.kr
40	(주)비브이씨피에스에이디티 코리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원로 306 TEL : 031-8002-3060	www.bureauveritas.co.kr
41	(주)랩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백옥대로 2182-42 TEL : 031-322-6767	www.lab-t.net
42	(주)이엔지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경충대로 135-60 TEL : 031-727-8300	www.the-eng.co.kr
43	(주)유엘코리아	서울특별시 테헤란로 152 TEL : 031-337-9900	www.korea.ul.com
44	(주)케이알엘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545 TEL : 070-4324-6613	www.krlabs.co.kr
45	인터텍이티엘셴코 (주)	경기도 군포시 공단로 160번길 3 TEL : 031-8069-3703	www.intertek.co.kr
46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99 TEL : 053-670-7310	www.kcl.re.kr
47	(주)아이씨알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황금3로7번길 112 TEL : 02-6351-9002	www.icrqa.com
48	(주)엔씨티	경기도 화성시 금곡로 211-71 TEL : 031-323-6070	www.nct.re.kr
49	재단법인 한국조명아이씨티연구원	경기도 부천시 도약로 261 TEL : 032-325-7045	www.kilt.re.kr
50	(주)디에스텍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중부대로 2565번길 25 TEL : 031-336-1798	www.dstechkorea.com
51	피씨테스트코리아(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1로 13 TEL : 031-660-7319	www.pctest.com
52	재단법인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 77 TEL : 053-210-9611	www.kiria.org
53	한국광기술원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로108번길 9 TEL : 062-605-9114	www.kopti.re.kr

【출처】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 <https://www.rra.go.kr> ('20. 10. 기준)



참고3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파인증 시험비용 지원사업

1. 사업개요

● 사업 목적

우수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파법 제58조의2에 의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전파인증(적합성평가) 시험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 제품 출시 활성화

● 주최/주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전파진흥협회(전자파기술원)

● 지원 내용

- 지원규모 : 3.95억원 ('21년)
- 평가기준에 따라 해당 제품을 선정하고, 정부보조금 한도내에서 기업규모에 따라 적합성평가 기준별 표준단가의 50~90%(1개 제품 당 최대 5백만원까지 지원)를 차등 지원

기준	지원비율
매출액 10억원 미만	90%
매출액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70%
매출액 100억원 이상	50%

- 사업 기간 중 기업당 최대 2개 제품 전파인증 시험비용(시험수수료) 지원

※ 인증비(적합성평가수수료) 및 면허세 제외

● 신청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개발하여 전파법에 의한 적합성평가(적합인증 및 적합등록)를 받은 제품

구분	1회	2회	3회
적합인증(등록)일	'20.1.18 ~ '21.1.17	'20.4.5 ~ '21.4.4	'20.8.2 ~ '21.8.1

- ※ 적합인증(등록) 획득 전 제품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 제품의 적합인증일 또는 적합등록일이 회차별 신청·접수 시작일 이전 1년 이내
- ※ 국내 중소기업 개발 제품만 신청 가능(인증서상 제조사와 지원신청 기업과 동일, 해외 제조사일 경우 불가)

- 가점부여

- 창업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Inno-Biz기업, 벤처기업, 녹색기업, 코로나 피해기업

신청 제한조치

- 사업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 제품에 대한 인증 획득으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 (다만,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지원가능)

※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지원금 지급 이전에 신청제한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 분야

- 적합성평가(적합인증 및 적합등록)에 소요되는 시험비용을 지원
- ※ 적합등록 대상기자재의 경우, 자기시험 적합등록 대상기자재는 제외

2. 신청요령

● 추진 일정

구분	1회	2회	3회
신청·접수	21.1.18 ~ 3.5	'21.4.5 ~ 5.21	'21.8.2 ~ 9.29
평가·선정	'21.3.8 ~ 3.31	'21.5.24 ~ 6.30	'21.9.30 ~ 10.29
지원금 지급	'21. 3월말	'21. 6월말	'21. 12월중

※ 지원일정은 변동 가능

● 신청서 작성 및 등록

- 신청기업은 전자파기술원(www.emti.or.kr)에 접속하여 [전파인증 시험비용 지원 바로가기] → [지원신청] 메뉴에서 [첨부파일] 온라인 지원 신청 매뉴얼'을 참조하여 지원신청서 작성 제출서류 등록

- ※ 등록한 신청서 및 제출서류는 회차별 신청·접수기간에는 수정이 가능하나 해당 회차별 마감일 이후에는 수정·등록 불가
- ※ 신청 및 접수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공지 및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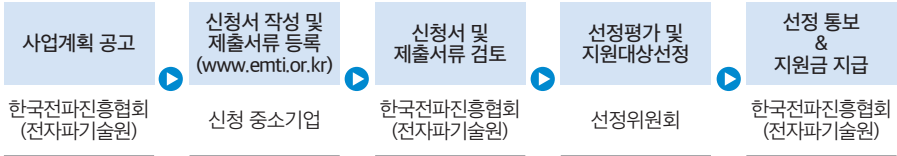
지원신청서와 제출서류 대조결과 지원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했음이 판명됐을 경우 해당기업에는 규정에 따라 참여 제한 등의 조치 예정

● 신청 구비서류

- 전자파기술 홈페이지 (www.emti.or.kr)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파인증 시험비용 지원' 안내페이지에서 첨부파일 '지원사업 계획공고' 참조

3. 사업지원 절차

● 추진 일정



4. 기타 공지사항

- 신청 취소 및 참여제한
- 신청 제한조치 대상기업이 신청한 경우
- 신청 구비서류의 허위제출(기재)등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반납하여야 하고, 2년간 참여 제한 조치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동 '사업 운영지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5. 문의처

- 우)04363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41길 29(원효로3가 1-154번지)
전자파기술원 전자파측정센터 2층
- 담당자 : 전자파기술원 김세운 과장 TEL : 02-703-2453 E-mail : ksu@rapa.or.kr
- 홈페이지 : <https://www.emti.or.kr>